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37

제출일자 : 2012. 9.
제 출 자 : 달성군수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군정조정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세부 절차 규정 마련 및 국제교류에 대한 결정을 추가하는 등 군정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위촉위원에 대한 자동 위촉 해제 규정 마련(안 제2조)
나.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추가(안 제3조)
다. 회의에 대한 수시 개최 규정 마련 등(안 제4조)
라. 안건제출 및 결과처리 규정 추가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
다. 기타사항
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(3) 입법예고
(가) 예고기간 : 2012. 8. 30 ~ 2012. 9. 19
(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(4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주요정책 및 시책을 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지원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당연직 위원은 국장 및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, 위촉위원은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④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.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.

제3조(결정사항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.
1. 대구광역시 달성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·변경에 관한 사항
2. 군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
3.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(다만, 법령에 따라 반드시 설치하여

야 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)
4. 법령에 따라 군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(이하 이 호에서 "위원회 등"이라 한다)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사항
5.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·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
6. 그 밖에 군수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회의) ①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.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 다만,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 다만, 다른 위원회 등의 기능을 대행할 때 해당 법령·조례 및 규칙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③전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·연구·의결로서 효력을 가지며,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제5조(의견의 청취)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6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기획담당으로 한다. 다만,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담당과 직원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.

제7조(안건제출 및 결과처리) ①제3조에 따른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, 심의번호를 부여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③안건의 주관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.
④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.
⑤간사는 회의종료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심의요구부서와 관련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8조(분과위원회) ①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②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,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기획담당이 된다.
④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.

제9조(수당과 여비)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기타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군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

심의번호		심의방법		주관부서	
안 건 명					
주문요지					
주문사유					
심의·결정 사 항					
관련법령 등 참고사항					

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·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부서장 ○ ○ ○ (인)

달성군군정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

[별지 제2호 서식]

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서

심의번호		심의방법		주관부서	
안 건 명					
주문요지					
의결내용					
위와 같이 의결한다. 년 월 일 **달성군군정조정위원회**					

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 지방자치법 제22조(조례)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